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신청요강

2015. 4.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①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신청 주관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전 책임자의 소속(주관기관)이 부합하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4쪽 참조)

구분	기 존		변 경
주관기관	① 대학(단과대, 학과, 부설기관 등) ② 대학 외 연구·사회·문화 기관	➔	① 대학(단과대, 학과, 부설기관 등)

②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사업 신청을 위한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원의 범위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 존		변 경
공동연구원	책임자를 제외한 강좌 참여자 전체	➔	책임자 외에 강좌를 기획·운영하는 자(강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강사진은 공동연구원 비포함)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은 다음 쪽 참조

③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신청요강 외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 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5. 5. 1.(금) 14:00 ~ 2015. 5. 12.(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15. 5. 1.(금) 14:00 ~ 2015. 5. 14.(목) 18:00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구비 서류	① 추진계획서, ② 기타 서류

참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구분	항목	비고
기본정보	생년월일	예) 19701231
	성 별	남성(1), 여성(2)
	연 구 실 전화번호	예) 02-123-1234
	이 메 일	예) sample@aaa.edu
	소속기관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입력
	학 과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 '소속학과 없음'으로 입력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전공코드	
학 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 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학과명 입력▷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신청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4	2015	비고
지원예산	○ 총예산 : 1,200백만원 - 지원과제 : 총 60과제	○ 총예산 : 700백만원 - 계속 : 25과제 - 신규 : 4과제 내외	
지원대상	○ 대학(단과대,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 대학 외부 각종 연구·사회·문화 기관(단체)	○ 대학(단과대,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지원유형 및 기간	○ 유형1(인문주간 선택참여형) : 1년 ○ 유형2(인문주간 필수참여형) : 2년	○ 2년(인문주간 필수참여형)	
과제당 지원규모	○ 유형1 : 15백만원 이내 ○ 유형2 : 25백만원 이내(연간)	○ 25백만원 이내(연간)	
평가절차 및 방법	○ 요건심사→패널평가→종합평가	○ 좌동	
보고서 제출	○ 유형1 - 중간보고서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유형2 - 연차보고서 : 1년차 연구종료 2개월 전 - 결과보고서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차보고서 제출 : 1년차 연구 종료 2개월 전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일정	○ 공고 5월 / 접수 5.30. ~ 6. 9. / 평가 6~8월 ○ 연구개시 : 9. 1.	○ 공고 4월 / 접수 5.1.~ 5.12. / 평가 6~8월 ○ 연구개시 : 9. 1.	

- 차례 -

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6
■ 사업목적	6
■ 지원근거	6
■ 중점 추진방향	6
■ 기대효과	7
■ 추진일정	7
II. 지원내용	8
■ 예산	8
■ 지원형태 및 지원규모	8
■ 연구개시	8
III. 신청	9
■ 신청자격	9
■ 신청 및 참여제한	10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1
■ 신청절차	11
IV. 평가 및 선정	16
■ 평가단계	16
■ 선정 및 협약체결	17
V.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8
VI. 연구과제 관리	19
VII. 기타	23
VIII. 인문주간	24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27
[붙임2] 추진계획서 양식	28
[붙임3] 강좌개설확약서	38
[붙임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합의서	39
[붙임5] 기관 간 컨소시엄 확약서	40
[붙임6] 시민인문강좌 강연장 사용 동의서	41
[붙임7]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42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학계와 일반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증진에 기여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3. 중점 추진방향

- 교육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중심으로 지원하고, 초·중고생*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위주로 강좌 편성**
 - * (예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수능 이후 고3 인문학 특강 등
-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위한 **신규 지원과제 금액 조정**
 - '14년 : 유형1(15백만원), 유형2(25백만원) → '15년 : 25백만원 일원화
 - 사업비 내 간접비 편성(2백만원 정액)을 통한 유기적인 사업 추진 유도
 - 인문주간행사와 시민인문강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일부를 인문주간 행사 비용으로 별도 편성(5백만원 이내)**
- 현장점검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
 - 시민인문강좌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4. 기대효과

- 일반 대중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의 사회 기여도 제고
- 인문학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학술성과 대중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 체제 활성화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1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과제 접수
'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25과제)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5. 7.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점검 실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9.1) ▪ 신규 및 계속과제 워크숍(인문주간 관련 안내 포함)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주간 참여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선정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35과제)
'1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선정 종료과제 결과평가 실시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 : 백만원/과제)

사업명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시민인문강좌	신규	84.2	4	간접비 포함
	계속	615.8	25	
	계	700	29	

2. 지원형태 및 지원규모

○ 지원형태 : 연구자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인문강좌 지원**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대학(단과대, 학과, 부설기관 등) 소속이어야 하며, 연구책임자 소속이 주관연구기관이됨. 타 기관(대학 또는 대학 이외) 간 컨소시엄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이어야 함.

※ 지자체(시/군/구 단위, 지역 교육청 등)와 연계 권장

○ 지원규모 및 강좌내용 (※ '15년에는 청소년과 소외계층 대상의 강좌만 지원)

강좌대상	세부내용	규모	기간
청소년	초·중·고 학생 중심의 인문강좌 (예시)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수능 이후 고3 인문학 특강 등	25백만원 이내 / 연	2년
소외계층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노숙인,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미혼모, 노인, 교도소, 군장병 등 인문학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 인문학 강좌		

※ 공통사항 : 인문주간 참여 의무

3.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5. 9. 1.

※ 강좌는 연구개시일 이후 연차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함.

Ⅲ

신청

1.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단과대, 학과, 대학 부설기관 등)

※ 컨소시엄 형태(대학 간, 대학과 대학 외 기관 간 모두 가능)로 신청할 경우, 1개 대학이 대표 주관연구기관이 되어야 하며, 대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관리 및 결과보고 등의 총괄적 책임을 짐.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단과대, 학과(부) 및 부설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연구자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공동연구원(강좌 기획·운영자)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위와 같은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는 연구자를 원칙으로 하되, **최근 5년간 강의 실적***이 있는 자도 참여 가능

* 강의실적 목록(증빙 불필요) 및 이력서 제출 필수

※ 강의를 기획·운영하는 연구자에 한해 공동연구원(강의도 가능)으로 분류함.

○ 강사진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위와 같은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또는 **최근 5년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강의실적 목록(증빙 불필요) 및 이력서 제출 필수

- ※ 강사진은 대학 이외 외부 인력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화면에 등록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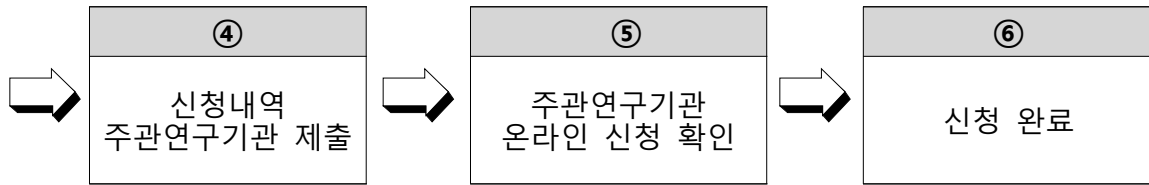
○ 연구보조원

- 사업별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붙임 1)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2인 이내로** 구성

2.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인문도시지원사업과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을 합해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전문 강사진은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제한함**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는 강좌추진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좌가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을 이용하여 개최될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함.
-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컨소시엄 기관 간 합의하여 (대표)주관연구기관을 정하여 신청함.
- 지자체와 연계할 경우에도 연계 방식 및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빠른메뉴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 '공개'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 시 [붙임3]의 신청서류 파일(추진계획서 등)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3)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평가요청학문분야 및 담당 학문단을 '연구분야 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 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나. 온라인 신청

1) 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추진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는 **별도 분리하여 각각 탑재**하여야 함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제출 서류

구분	필수	해당시	비고
추진계획서	○		. 한글 또는 MS워드 작성
강좌개설확약서	○		. 주관연구기관(신청기관)과 강좌 개설기관이 다를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합의서		○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기관 간 컨소시엄 확약서		○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강의실적 목록 및 이력서		○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시민인문강좌 강연장 사용 동의서		○	. 반드시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입력사항 및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요건 탈락 및 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2)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KRI에 입력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은 신청요건 확인에 활용하고 평가 시 업적평가에 반영됨

- 연구책임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업적을 대표할 수 있는 3편만을 선택하여야 하고, 공동연구원은 본인의 대표업적 1편만을 선택함. 연구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업적에 상응하는 강의실적 목록 및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 강사진은 온라인 신청화면에 별도로 입력하는 창이 없으므로 추진계획서 상에 연구업적 또는 강의실적 및 이력을 작성하여야 함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추진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연구장비 신청 시 사유를 온라인에 입력하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PC,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캠코더 등)의 구입 지양

다. 온라인 신청완료 후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추진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사업 신청 관련 주요 절차

일 정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4.30)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강좌개설확약서, 지방자치단체 합의서, 기관 간 컨소시엄 확약서, 강연장 사용 동의서 등 준비	-
	② KRI 연구업적 수정		
	③ 추진계획서 작성		
	④ 평가 담당 학문단 확인		

15년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신청요강

일 정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온라인 신청 (5.1~5.12)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 시스템
	② 「추진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 파일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 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 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5.1~5.14)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 시스템

IV.

평가 및 선정

1.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평가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가. 1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나. 2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계획서 (70)	강좌 개설의 필요성	• 강좌의 목적은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10
	추진계획의 적절성	•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강좌 내용 및 범위가 강좌 대상에 적합한가? • 프로그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독창적인 내용으로 인문학의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는가? • 강연 장소는 적절한가?(접근성 및 편이성)	40
	참여연구원의 적절성	• 주제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가? •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공동연구원 및 강사진의 구성은 적절한가? (강사진의 경우 대학 이외 30% 이상 참여)	15
	사업비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대비 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 선정 규모가 적정한가?	5
신청 기관 평가 (30)	강의실적 및 운영능력	• 강의실적 등이 과제 추진 역량으로 충분한가? ※ 관련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	15
	기관의지	• 안정적인 강좌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한가? (강의시설 및 행정인력 확보 방안 등)	15
합계			100

다. 3단계 :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지원비 결정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2. 선정 및 협약 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 공개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사업비 협약 체결

V.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 다년 과제의 경우 연차점검 후 지원이 결정된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VI.

연구과제 관리

1. 보고서 제출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차년도 연구개시 2개월 전 (~'16. 6. 3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추후 안내)

나.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입력

다.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추후 안내)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 학술활동 요약문은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직접 입력
 -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 파일 탑재(해당 시)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제재 조치

2. 점검 및 평가

가. 연차점검

- 점검시기 :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년도 연구개시 전
- 점검방법

구분	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점검단

○ 점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측정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8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40)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20)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5)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5)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수립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나. 종료과제 결과평가

○ 평가시기 :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 평가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등

○ 평가결과 및 조치 : ‘미흡’ 판정 과제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3. 성과 관리 등

가. 현장점검

○ 실시대상 : 당해 연도 수행 연구과제

○ 수행일시 : 연구개시 후 수시 점검

※ 현장점검 결과 강좌운영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에 주의 통보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주의 통보를 받은 기관은 연구과제를 해약할 수 있음.

나. 워크숍 개최

○ 실시대상 : 신규/계속과제 참여자

○ 주요내용 : 사업 관리 중점사항 및 인문주간 참여 방법 설명 등

○ 개최일시 : 9월 말

다. 연구성과 등록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결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라. 사사표기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집, 포스터, 교재 등 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

국문 표기	이 강좌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과제번호)
영문 표기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과제번호)

- 포스터·현수막 등에는 다음과 같이 주최, 주관, 참여기관명을 명기

주최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 : 참여기관명

Ⅶ.

기타

1. 간접비 지급

- 사업비에 포함하여 과제당 2백만원 지급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 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15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진흥팀 : 042-869-6204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2-3460-5523
- 역사철학분야 : 02-3460-5533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사회과학분야 : 042-869-6301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7 (예술체육 및 복합학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4

○ 정산 관련 문의

- 연구비 정산팀 콜센터 : 042-869-7788

Ⅷ.

인문주간 (Humanities Week)

시민인문강좌 사업을 수행하는 팀은 '15년 10월말 개최 예정인 '인문주간' 행사에 집중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인문주간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에 참여하여야 함.

1. 행사목적

- 일반 대중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인문학 활동을 위한 강조 기간을 설정하여 학계와 사회의 소통 활성화 및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렴 계기로 활용

2. 기본방향

-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선정기관 등에서 인문학 관련 행사(강연, 토론회, 대담, 답사,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 추진
- 인문학 축제의 장인 '인문주간'의 공식 개막 행사* 개최 및 시민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 제고 및 소통의 장 마련

* 개막식(청춘인문강좌, 인문공감콘서트와 연계), 폐막식(한·중인문학포럼 개최와 연계)

3. 2015년 인문주간 행사 개요

가. 주제

“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 ”

○ 2015년도 인문주간 기획의도

[주제: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

사람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사람은 지향과 이해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바라는 행복한 삶은 타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 주는 학문입니다. 사회적 강자에게는 영혼의 부패를 막는 성찰의 거울로, 그리고 약자에게는 희망의 버팀목으로 다가서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2015년 인문주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서 인문학의 역할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화두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경쟁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적 삶의 태도를 넘어서기 위해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인문학이 해야 할 성찰과 모색은 무엇인가?
3. 사회적 강자들이 '영혼 없는 수월성'(Excellence Without a Soul)에 함몰되어 도덕적 헤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4. 지식정보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창조의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서 인문학의 기능은 무엇인가?
5. 다원화된 사회의 깨어있는 주체로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은 무엇인가?

이 밖에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서 인문학이 풀어야 할 화두는 많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2015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 -

나. 중점 개최기간 : 2015. 10. 26.(월) ~ 2015. 11. 1.(일)

※ 인문주간 행사는 10월 한달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되 중점 개최기간에 행사가 집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다. 개막식

○ '15년 인문주간 주제와 연계하여 개막식 행사 추진

- 중 양 : 주요 강연 프로그램(청춘인문강좌, 인문공감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개막행사 추진
- 참여기관 : 각 지역별 자체 개막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

라. 주요 프로그램

○ 중 앙 : 한국연구재단 추진

- 2015 인문주간 주제에 맞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온·오프라인 데일리 이벤트* 기획 추진

* (예시) 전국 인문주간 참여 인증샷 및 후기 이벤트 등

○ 참여기관

-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선정기관을 중심으로 인문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인문학 관련 강연, 토론회, 대담, 답사, 공연 및 각종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 추진

마. 폐막식

○ 인문주간 중앙 폐막 행사와 전국 참여기관 인문주간 폐막 행사
동시 개최

- 중 앙 : 한·중 인문학포럼 행사와 연계 진행하여 대중의 관심 유도
- 참여기관 : 각 지역별 자체 폐막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

4. 시민인문강좌 수행기관(수행과제)의 역할

- 인문주간 기간 내 인문주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 개최
- 사업비 중 약 5백만원 이내에서 인문주간 행사비로 편성
- 인문주간 개막식 및 폐막식 참여

붙임1

시민인문강좌 사업비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비용 항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 보조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학술연구비	강사료 및 원고료	- 강좌 수당 - 원고료 - 강사료는 시간당 75천원~200천원 이내 - 원고료는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단순 편집은 지급 불가) 주관연구기관 원고료 집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여비	- 출장 등에 필요한 경비 - 여비는 인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회의비	- 회의에 필요한 경비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운영비	- 강좌 추진 운영비 - 강좌 추진과 관련된 교재비, 현장실습비, 홍보비, 행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구입비 등 제잡비
	인문주간 행사비	- 인문주간 행사 개최 관련 비용 - 5백만원 이내 ※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최대한 예산 반영	
학술활동수당	-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연구책임자 : 1인 연 480만원(월 40만원) 이내 ※ 연구책임자는 강사료 지급 불가 - 공동연구원 : 1인 연 480만원(월 4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또는 강사료 중에서 선택 가능 ※ 강사료와 중복 지급 불가		

※ 예산 운영 계획은 온라인 신청 시 항목에 따라 입력함.

붙임2

추진계획서 양식

2015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추진계획서

과제명					
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분야 ¹⁾	시민 대상	()	신청기관 유형	단독	()
	소외계층 대상	()		컨소시엄	()
	혼합	()			
강좌개요	강좌대상	대상기관	강좌개설지역	참여예상인원	
				총 명	
강좌기간	2015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총 ○○개 강좌)				
인문주간 ²⁾					
참여기관 ³⁾	기관명	기관장명	역할		
국고 신청금액	1차년도	000천원	2차년도	000천원	

- 1) 지원분야 : 시민(초중고 학생), 소외계층(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노숙인,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혼합 중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2) 인문주간 : 세부행사 등 요약하여 서술
- 3) 참여기관 : 대학,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기관 등 연계 기관에 대해 작성

이 쪽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표 앞장]과 [I.시민인문강좌 내용] 사이에 “목차” 배치
- ◎ 시민인문강좌 내용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작성함
- ◎ 추진계획서는 A4용지 15매 이내에 작성해야 함. 단, 참고문헌 등은 15매 이내에 포함되지 않음.
- ◎ 인용내용 및 자료는 반드시 출처(쪽수 포함)를 명시하여야 함.
- ◎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업적을 공개하는 오픈(Open) 평가를 실시함.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자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 ‘연구비 사용계획’은 본 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으나, 신청요강 내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p.27)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I. 시민인문강좌 내용

1. 추진목적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서술함.

2. 강좌대상 기관 및 수강대상

3. 추진내용

※ 강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목적 등 추진내용 서술

4. 추진방법

※ 지역 기관(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연계 방안, 소통 증대를 위한 강의법, 수강생 확보 및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5. 인문학 확산 및 활용 기대효과

II. 시민인문강좌 운영

1. 참여인력 구성

구 분	성명	소속	직위	내부/외부	담당강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전문강사진					
...					
강사(공동연구원 포함) 대학 이외 비율 : ○○명/총○○명 (○○%)					

※ 시민인문강좌의 확산을 위해 대학 이외 강사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강좌별 일정

가. 1차년도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일정	시간	장소		수강원	비 고
					장소명	내부/외부		
1								
2								
3								
4								
5								
...								

나. 2차년도

번호	강좌명(주제)	강사	일정	수강원	비 고
1					
2					
3					
...					

※ 2차년도 일정은 대략적으로 작성 가능

3.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비고

※ 연구진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한 교재일 경우 비고란에 '자율 교재'로 명시

4. 수강생

가. 수강생 확보 방안

※ 홍보 계획 및 강좌대상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나. 강좌별 수강생

강좌명	강좌대상	예상인원	비고
계			

※ 예상인원은 강의 횟수 × 참여인원수로 계산

5. 지자체(교육청 등)의 협력사항(해당될 경우 작성)

가. 지자체(교육청 등) 협력사항

※ 대응자금, 현물, 인력 지원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나. 대응자금 투자 및 활용계획

※ 대응자금의 경우는 활용계획 작성

구분	대응자금	비고

6. 홍보 계획

Ⅲ. 인문주간 추진계획

※ 작성 시 공고 내용 중 인문주간 기획의도(주제: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추진목표

2. 추진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연계 방안 및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5. 추진일정

6. 인문학 확산 및 활용 기대효과

IV. 참여기관 현황 및 강좌 운영실적

1. 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주 소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 대학, 민간기관, 지자체 등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모두 기입

2. 주관연구기관의 강좌 운영 실적

연도	강좌명	강좌 소개	운영기간	강좌수 (강의시수)	수강 대상	수강자수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취지와 관련된 강좌 운영 실적을 기입

※ 단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타 사업 추진성과 제출 (양식은 현재 양식을 토대로 특성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 가능)

※ 부족 시 별지사용 가능

3. 강좌운영 공간 및 시설 현황

가. 주관연구기관 보유 공간 및 시설현황

※ 시민인문강좌에 사용될 강의실 수 및 필요 기자재 현황(또는 확보계획)

※ 현재 보유 현황과 확보계획을 구분하여 작성

나. 주관연구기관 이외 타 기관 공간 및 시설 이용 계획

4. 행정인력 확보 현황

V. 연구업적 및 강의 실적 (해당될 경우 작성)

1. 전문강사진 연구업적 요약문

※ 전문강사진의 대표 연구업적 1편을 선택하여 개인별로 각각 작성(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작성 불필요)

성명		소속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역서() 논문 () 외국특허()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2. 강의실적 및 이력사항

가. 강의실적

성명	소속	강좌명	강좌수행기관	수강대상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내용 및 비고

- ※ 공동연구원 또는 강사진 중 연구업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 최근 5년간(2010. 1. 1.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강의 실적 기술
- ※ 수강대상 : 수강생이 누구인지 '대학생, 일반인, 청소년, 노숙자(예시)' 등으로 작성
- ※ 내용 및 비고 : 강의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기술

나. 이력사항

- ※ 공동연구원 또는 강사진 중 연구업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별로 각각 작성(강좌지원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력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

붙임3

강좌개설확약서

강좌개설확약서

신청 과제 내역	사업명	2015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과	
	주관연구기관						
<p>○○ 대학교는 2015년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한 강좌운영 계획을 추진·개설하는 것에 대해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 ○.</p> <p style="text-align: center;">○○ 총장(산학협력단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p>							

※ 컨소시엄으로 추진될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강좌개설확약서 제출

※ 직인처리된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기간 중 탑재하고 원본은 주관연구기관 사업비 관리부서에 보관

붙임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합의서

2015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합의서 [주관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신청 과제 내역	사업명	2015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과	
	주관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명			
	국고신청액			원	대응자금		

주관연구기관(○○대학교)과 참여도시(○○ 시/군/구)는 2015년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별첨 추진계획서에 따른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참여도시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등 추진 프로그램에 맞추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5. ○. ○.

주관연구기관 : ○○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장) ○○○ (인)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장 ○○○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기관 간 컨소시엄 협약서

2015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협약서

신청 과제 내역	사업명	2015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과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대학교)과 참여기관은 2015년도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추진계획서에 따라 상호협조하여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협약내용)

2015. ○. ○.

주관연구기관 : ○○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장) ○○○ (인)

참여기관 : ○○○기관장 ○○○ (인)

참여기관 : ○○○기관장 ○○○ (인)

참여기관 : ○○○기관장 ○○○ (인)

참여기관 : ○○○기관장 ○○○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6

시민인문강좌 강연장 사용 동의서

2015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협약서

(주관연구기관 이외 타 기관 강연장 사용 동의)

신청 과제 내역	사업명	2015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		소속 학과	
	주관연구기관						
	강연장 대여기관						

우리기관은 주관연구기관(○○○대학교)이 추진할 예정인 2015년도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인문강좌 프로그램에 우리기관의 강연장을 별첨 추진계획서에 따른 일정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 ○. ○.

강연장 대여기관 : 기관장 ○○○ (인)

주관연구기관 : ○○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장)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